

제 454 호(법인설립허가일 : 1982. 6. 29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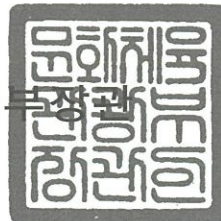
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

1. 법인 명칭 :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(합동측) 유지재단
2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(대치동)
3. 대표자
 - 성 명 : 김 종 준
 - 생년월일 : 1955년 3월 3일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20(상계동)
4. 사업 내용 :
 - 총회 및 노회와 지교회의 자산을 보호, 관리
 - 국내 전도와 해외선교, 기독교 교육과 신학교육 등
5. 허가 조건 : 뒷면에 기재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.

2019년 11월 11일(대표자 변경에 따른 재교부)

문화체육관광부



원본대조필



본 증서는 본 총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법인임을 확인하는 용도 외에, 채권 채무를 형성하는 어떠한 법률 행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.

허가조건 및 준수사항

1. 「민법」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.
2.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·인가·등록·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3.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례서류,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.
4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- 가.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
 - 나.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- 다.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- 라.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5. 법인이 해산(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)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.
6.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.

〈 변경사항 〉

변경일	내 용	확 인
2010. 11. 1.	법인 대표권자 변경	
2011. 10. 17.	법인 대표 허관준 → 이기창	
2013. 01.03.	법인 대표권자 변경(이기창 → 정준모)	
2013. 11. 12.	법인 대표권자 변경(정준모 → 안명환)	
2014. 10. 29.	법인 대표권자 변경(안명환 → 백남선)	
2015. 11. 04.	법인 대표권자 변경(백남선 → 박무용)	
2016. 11. 07.	법인 대표권자 변경(박무용 → 김선규) (※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법인 소재지 변경 포함)	
2017. 10. 25.	법인 대표권자 변경(김선규 → 전계헌)	
2018. 11. 8.	법인 대표권자 변경(전계헌 → 이승희)	
2019. 11. 11.	법인 대표권자 변경(이승희 → 김종준)	